

농업인안전보험  
유족(장해)급여금  
연금전환특약

약관

## 목 차

|                                    |  |
|------------------------------------|--|
| 제1조 (목적) .....                     |  |
| 제2조 (특약의 내용) .....                 |  |
| 제3조 (보험금 지급방식을 연금지급방식으로 변경) .....  |  |
| 제4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  |
| 제5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  |
| <br>[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  |

## 농업인안전보험 유족(장해)급여금 연금전환특약 약관

###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부가됩니다. (이하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을 '해당계약'이라 합니다)

### 제2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해당계약에서 유족급여금,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방식을 연금지급방식으로 변경)에 따라 연금지급방식으로 보험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방식을 연금지급방식으로 변경】

- ① 해당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유족급여금, 고도장해급여금 및 재해장해급여금을 청구할 때에 보험금 지급방식을 연금지급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연금지급형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연금지급형태        | 연금지급기간 | 지급주기      | 지급횟수 |
|---------------|--------|-----------|------|
| 5년지급형 (매년지급)  | 5년     | 매년 (연 1회) | 5회   |
| 10년지급형 (매년지급) | 10년    | 매년 (연 1회) | 10회  |
| 20년지급형 (매년지급) | 20년    | 매년 (연 1회) | 20회  |
| 5년지급형 (매월지급)  | 5년     | 매월 (연12회) | 60회  |
| 10년지급형 (매월지급) | 10년    | 매월 (연12회) | 120회 |
| 20년지급형 (매월지급) | 20년    | 매월 (연12회) | 240회 |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방식을 연금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연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연금지급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하 '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봅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금은 유족보험금, 고도장해급여금 및 재해장해급여금에 연금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연금지급률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을 고려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원리금 균등분할 지급)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해당계약 체결당시의 평균 공시이율(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을 적용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 받는 도중에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잔여 연금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및 해당계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재활(고도장해)급여금 및 재활(재해장해)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보험금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 지급방식을 연금지급방식으로 변경)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2회 이후의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 보험금 지급일 예시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제5조 【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을 적용합니다.

## [별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구 분                                             | 적립기간                                         |                                                   | 적립이율                                                                 |
|-------------------------------------------------|----------------------------------------------|---------------------------------------------------|----------------------------------------------------------------------|
| 연금지급방식에<br>의한 1회 연금<br>(제3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br>이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br>60일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br>90일내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연금지급방식에<br>의한 2회이후<br>연금<br>(제3조 제1항<br>내지 제2항) | 지급사유가<br>발생한<br>날의<br>다음날부터<br>청구일까지<br>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단,<br>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br>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평균공시이율                                                               |
|                                                 |                                              | 보험기간 만기일(단,<br>효력이 없게 된<br>경우에는 효력이 없게<br>된 날) 이후 | [2022년 4월 이후 체결된 계약]<br>-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br>-1년 초과 : 평균공시이율의 40% |
|                                                 |                                              |                                                   | [2022년 3월 이전 체결된 계약]<br>-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br>-1년 초과 : 1%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주) 1. 제2회 이후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